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35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7.

발의자 : 박정·이훈·신경민

윤후덕·노웅래·기동민

신창현·정춘숙·권칠승

원혜영·김병욱·김정우

박찬대·박주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하거나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부(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제공한다)”를 “대부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.

3. 보조금 등 그 밖에 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

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군 숙소 지원 등)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 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군 숙소 지원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<u><후단 삭제></u></p>
<p><u><단서 신설></u></p>	
<p><u><신 설></u></p>	
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②</u> • <u>③</u> (생 략)</p>	<p><u>로 정하는 주거지원</u></p> <p><u>②</u>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<u>③</u> •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--	--